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 만들기’ 제20대 국회에 바란다! 핵심 젠더과제 공개질의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제20대 총선을 맞아 젠더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정당 및 후보의 공약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 여성연합 지부 및 회원단체, 연대단체와 함께 ‘총선의제 만들기 기획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기획팀은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11개 주제와 8개 대상, 1개의 독립과제로 총 20개 영역의 젠더과제를 마련하고, 이 중 20대 국회에서 주력할 핵심 젠더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본 질의서는 핵심 젠더과제를 귀 정당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귀 정당의 답변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언론과 온라인에 공개됩니다.

* 답변 참고자료는 4~21쪽을 참조해주시시오.

* 회신은 2~3쪽의 답변을 작성하시어 회신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회신 마감일자 : 2016년 2월 12일(금) 오후 5시까지
- 회신처 : plc@women21.or.kr
- 담당 : 양이현경 여성연합 정책실장 / 02-313-1632

● ● ● ● ● ● ● ● <참여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여성환경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총 42개 단체)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 만들기’ 20대 국회에 바란다! 핵심 젠더과제 공개질의서

- 정당명 : 노동당
- 부서 : 정책위원회
- 담당자 : 정책실장 장홍배
- 연락처 : 010-2700-8937

<제20대 총선에 요구하는 핵심 젠더과제>

- | | 예 | |
|--|---|---|
| 1.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을 전부개정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 ■ | □ |
| 2.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 | □ |
| 3. 상시지속업무의 신규채용은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 | □ |
| 4. 국공립어린이집을 30%로 확대하기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 ■ | □ |
| 5.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 | □ |
| 6. 공공임대주택을 30%로 확대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 | □ |
| 7. 주거정책 의사결정기구에 청년할당을 실시하도록 「주거기본법」을 개정하는데 찬성하십니까? | ■ | □ |
| 8. 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의 처벌을 법제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 | □ |
| 9.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법제화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 ■ | □ |
| 10. 가정폭력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 | □ |
| 11.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 | □ |
| 12. 미군 ‘위안부’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미군위안부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 ■ | □ |

<제20대 총선에 요구하는 핵심 젠더과제 세부내용>

13.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1/3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	☐
14.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찬성하십니까?	■	☐
15.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이사에 여성 30%를 할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찬성하십니까?	■	☐
16. 남북여성교류를 저해하는 5.24조치 해제에 찬성하십니까?	■	☐
17.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구조에 여성 40% 참여를 보장하는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찬성하십니까?	■	☐
18.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체류관리법」, 「관광진흥법」 개정 찬성하십니까?	■	☐
19. 여성장애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	☐
20.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및 국가의 양육비 선 지급 범위와 금액 확대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찬성하십니까?	■	☐
21.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전담부서와 인력 배치, 정책 심의 및 자문위원회 설치 등 추진 체계에 대한 내용 명시 등을 위한 개정 찬성하십니까?	■	☐
22. 북한이탈여성의 제3국 출생자녀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찬성하십니까?	■	☐
23.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하십니까?	■	☐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선결과제>		예
1.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에 찬성하십니까?	■	☐
2.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철회에 찬성하십니까?	■	☐

귀 당은 주어진 질문에 소신에 따라 답변하였음을 약속드립니다.	장흥배 직인생략 (인)
------------------------------------	--------------

젠더 과제 1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의 전부개정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	--

1)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양성평등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양성’평등을 ‘젠더(gender)’평등이 아닌 ‘생물학적 성별(sex)’에 따른 기계적 평등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즉 ‘양성’평등을 ‘젠더’ 사이에, 혹은 젠더 내에 존재하는 차별과 권력의 문제를 해소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간의 생물학적 차이 위에서 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성평등 정책은 후퇴하고 현존하는 여성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은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을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들어서, 혹은 ‘남성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사업 방향 역시 기존의 성역할을 강화하고 여성과 남성의 기계적이고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되어 있어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변화를 위한 목적을 상실했다.

○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 관련 조항’이 “양성평등기본법 입법 취지에서 벗어났다”며 삭제 의견을 명령했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에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해당된다고 하면서도 성소수자와 관련된 정책은 이와 관련이 없다고 한 것으로, 매우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법적 해석이다. 또한 정부가 성소수자들을 실질적으로 배제하고 차별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 개념의 몰이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2) 정책과제

○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의 전부개정

○ 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평등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방향은 ▲‘성별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 해소 ▲여성의 권리증진 및 세력화를 통한 성평등사회 실현 등으로 명확히 할 것

젠더 과제 2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최저임금법」 개정
---------	--

1) 현황 및 문제점

○ 성별임금격차는 차별의 결과이며 저임금노동자 중 여성비율이 높은 것과 여성비정규직 문제와 연결된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와 연결된다. 특히 성별임금격차의 원인 중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설명되지 않는 차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한국의 남녀임금격차 : 37.4%(2012년 기준), 10년 넘게 OECD 국가 중 1위,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한 손실분 58.3%, 남성 프리미엄 3.9% ⇒ 설명되지 않는 차별 : 62.2%¹⁾.

- 여성비정규직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정해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성별임금격차가 줄어든다.²⁾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여성비정규직의 월 평균임금 : 121만원, 최저임금 : 월 116만원(2015년 3월 기준 / 통계청, 2015)

- 2014년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으로 이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38.6%에 불과하다. 또한 2014년 3월 기준 4천 4백여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여성의 임금은 월 116만원으로 2014년 기준 최저임금 1,088,890원과 거의 일치한다.³⁾

- 통계상으로 40% 상당의 남녀임금격차가 나타나지만 현실에서는 그 이상이다. 고질적인 남녀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남녀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 임금격차 해소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직원 평균 연봉 조사 결과 : 남성 7256만원, 여성 4213만원, 남녀임금격차: 58%(2015년 9월 현재 코스피 상장 726개사 조사)

2) 정책과제

- 최저임금 평균임금 50%이상 인상-제도화, 위반사업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 공공기관 남녀임금 격차(직급, 고용형태 포함)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연차별 개선계획 수립 의무화 및 성별임금격차 30% 이상 기관장 규제

젠더 과제 3	상시지속업무 신규채용은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
----------------	--

1) 현황 및 문제점

- 남성노동자 중 정규직은 677만 명(63.6%), 비정규직 388만 명(36.4%)인 반면 여성노동자는 정규직 364만 명(44.7%), 비정규직이 451만 명(55.3%)을 차지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비정규직 규모는 해가 갈수록 차이가 커지고 있다.

- 남성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성 정규직 임금은 68.2%, 남성 비정규직 임금은 52.7%, 여성비정규직 임금은 35.9%에 그친다.⁴⁾ 고용형태의 차이는 임금격차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에서 배제되고 모성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2014년 3월 여성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은 35.7%, 고용보험은 35.4%, 국민연금은 32.4%로 나타나고 있다.⁵⁾ 또한 남녀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 혹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 출산전후휴가조차 사용하기 어렵다.⁶⁾

- 비정규직이 야기하는 불안정 고용과 낮은 4대 보험 가입률, 낮은 임금과 지위, 각종 사내 복지혜택에서의 배제를 막기 위해 최소한 상시지속업무에서 신규채용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김난주, 2015. '성별 임금 격차와 시사점'

2) 세계은행의 인도네시아 사례 정책연구보고서, 2015

3) 김유선, 201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4) 김유선, 2015. 여성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

5) 김유선, 2014. 경제활동부가조사

6) 한국여성단체연합, 2014. '베이징+20과 post 2015,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변화' 인용

2) 정책과제

- 상시지속업무 신규채용은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

젠더 과제 4	국공립어린이집 30%로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	---

1) 현황 및 문제점

-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중 5.7%에 불과하며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10%만이 이용하고 있다.

※ 전체 국공립어린이집의 33.9%가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증가분 373곳(2011년 2116개소에서 2014년 2489개소) 중 154곳(2011년 690개소에서 2014년 844개소)이 서울시에서 확충함⁷⁾.

- 보육의 공공성 확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 주도 아래 민간어린이집이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의 관리감독 체계 미비, 보육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 시설에 한해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국공립어린이집 모델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⁸⁾.

2) 정책과제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2020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30% 이상이 되도록 확대

젠더 과제 5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 「모자보건법」 개정
----------------	---

1) 현황 및 문제점

- 적정 피임교육 부재, 출산과 관련한 사회기반의 미비로 한국의 인공임신중절률은 세계 1위이다. 2015년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30만여 건의 인공임신중절이 행해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약 95%가 불법이다. 극히 제한적인 사유 이외의 인공임신중절을 처벌하는 현행법은 여성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임신중절률을 낮추지도 못하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수술은 여성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한국의 인공임신중절률은 여성 1000명당 15.8건으로 OECD 국가 중 최상위

- 2010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 '피임을 하지 않아서 수술을 택'한 경우가 62.2%. 적정 피임교육 부재는 높은 인공임신중절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비혼 여성의 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있고, 보육 및 양육의 공공성도 확보되어 있지 않음.
-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가 매우 제한적인 사회에서 여성은 임신중절과 관련된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없고, 고비용에 안전하지 않은 음성적 수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결정 과정 및 이후 삶에서 어떤 사회적 지원도 받을 수 없음.

7) 보건복지부, 2014. 보육통계

8) 서울시, 2014. 보육통계

-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은 한국정부에게 ‘낙태를 한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처벌 조항들을 삭제하기 위해 낙태와 관련된 법, 특히 형법을 검토할 것’,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관리를 위해 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2011. 7. 29)했다.

2) 정책과제

- 사회경제적 사유⁹⁾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모자보건법 개정)
-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여성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의료체계 마련 및 수술 이후 케어 및 피임 지원
- 피임교육의 공식화

젠더 과제 6	공공임대주택 30% 확대 － 「주거기본법」 개정
----------------	--------------------------------------

1) 현황 및 문제점

- 전세가격 폭등과 월세 부담 증가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 전세 가격은 2009년 3월부터 6년 4개월 동안 47% 상승¹⁰⁾, 전세 45.0%, 월세 55.0%로 월세가 전세보다 10% 가량 높아짐¹¹⁾. 수도권 평균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70%를 넘으며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깡통전세’ 위기 심각. 깡통전세로 인해 세입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10년 이상 임대) 공급량은 전체 주택의 5.5% 수준으로 OECD 평균(11.5%)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지만, 2007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¹²⁾.
※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장기전세·행복주택 등)은 2007년에 11만310가구, 2014년 4만8743가구에 대해 사업 승인. 장기공공임대주택비율 네덜란드 32%, 스웨덴 22%, EU 평균 13%.
- 서민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최소한 전체 주택의 30%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자에 한부모, 노인, 비정규직,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양이 매우 적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이들은 극히 제한적이므로 주거취약계층의 할당비율을 높여야 한다.
- 뿐만 아니라, 우선공급 대상자가 다인 가족 중심이기 때문에 급증하고 있는 1~2인 가구들은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기 어렵다.

2) 정책과제

-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전체주택의 30%까지 확대
- 한부모, 1인 가구,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우선공급 비율 확대 및 신설
- 공영임대료(인상 상한제) 시행으로 민간영역의 전월세 안정 도모

9) 출생에 따른 임부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핀란드 : 출산이나 육아가 산모나 그녀의 가족의 생활조건, 그리고 여타 상황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담을 주는 경우. 산모가 17세 이하이거나 40세 이상인 경우, 이미 4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 / 평가리 : 임부가 미혼이거나 지속적인 별거생활 중이거나 35세 이상이거나 임부와 그 남편이 자기 소유의 집이나 독립적인 셋집을 가지지 못한 경우로 규정.

10) 한국은행, 2015. 7. 인플레이션 보고서

11) 국토교통부,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12)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5년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

젠더 과제 7	주거정책 의사결정기구에 청년할당 실시 － 「주거기본법」 개정
----------------	---

1) 현황 및 문제점

- 청년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소득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갖추기 힘들다. 실제 조사에서도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비 부담률이 높게 나타나 구직중이거나 불안정 고용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주거난민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 저소득층 29.0%, 중소득층 17.0%, 고소득층 21.6%¹³⁾
-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전·월세 가격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고시원, 옥탑방, 지하, 반지하 등 갈수록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 서울시 주거 빈곤 청년(만 19~34세) : 52만3869명(전체 청년의 22.9%)¹⁴⁾
-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은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여성청년의 경우 더욱 불안한 상황에서 생활해야 한다. 실제 민달팽이유니온의 조사서 여성청년들이 남성들에 비해 안전 때문에 더 높은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년주거정책은 신혼부부와 대학생, 취업한 사회초년생에 초점이 맞춰져 구직중이거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 증가하고 있는 청년 가구,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전월세전환율¹⁵⁾을 정율화해서 전세보다는 월세 비중이 높은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안정화해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정책·제도 마련과 실행 단계에 민주적 의사결정기구에 청년들이 참여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정책과제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주거정책 민주적 의사결정기구에 청년할당 통해 청년 목소리 반영
- 전월세전환율 정율화 및 법제화

젠더 과제 8	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 처벌 법제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	---

1) 현황 및 문제점

- 성관계 동영상, 공중화장실 등을 몰래카메라로 찍은 촬영물이 여성의 일상생활에 고통을 주고 있다.
※ 몰래카메라 범죄 발생건수: 2010년 1,134건,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2014년 6,623건으로 해마다 빠르게 증가.(경찰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현황'자료)¹⁶⁾
- ※ 몰래카메라 범죄 상담건수: 2013년 645건 중 51건(12.6%), 2014년 695건 중 60건(11.5%), 2015년 439건 중 39건(10.9%)¹⁷⁾

13) 국토교통부,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14) 서울시·민달팽이유니온, 2010

15)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사용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아진다. 한국감정원의 조사 결과 2015년 9월 기준으로 전국은 7.2%, 서울·수도권은 6.8%, 지방은 8.2%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5.5%, 연립다세대주택 7.6%, 단독주택 8.7% 순으로 나타났다.

16) 노컷뉴스 2015. 8. 27일자 기사

17)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몰래카메라 관련 상담통계(2013.1.1~2015. 9. 31)

○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포협박 단계에 신속한 법적 개입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

※ 2013년 ~ 2015년 몰래카메라 범죄 피해 세부 내용 : 영상 및 사진 유포·협박 81건(54%), 몰래카메라 촬영 피해 35건 (23.3%), 동시 피해 34건 (22.7%)¹⁸⁾.
- 몰래카메라 범죄 촬영물 유포 협박을 받는 경우 피해자가 영상물을 확보하지 못하면 법적 대응이 어려움. 영상물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영상물 유포 협박에 대한 처벌조항을 마련해 2,3차 범죄 차단 필요.

○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처벌조항을 마련해야 몰래카메라 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
- 여성,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불법 촬영물은 본인과 지인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신체와 얼굴이 드러나기 때문에 인권침해문제가 심각함.
- 이러한 유통 사이트는 실명인증이나 성인인증이 없어 누구나 회원가입과 자료등록·공유가 가능함. 또한 한번 업로드 된 촬영물은 다른 사이트로 계속해서 유포되어 이로 인해 생기는 추가적인 피해도 매우 큼 . 이에 불법촬영물을 쉽게 보고 유포할 수 있어서 몰래카메라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흐리게 함.
- 특히 공공장소에서 몰래카메라로 찍은 촬영물에 대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처벌 필요.

2) 정책과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개정
- 유포협박 및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규정 명시와 사이트 폐쇄
○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국내외 법적 대응 방안 마련
- 전담 수사 인력 체계 마련 및 국제적 규제 법률망 구축

젠더 과제 9

스토킹 범죄 처벌 법제화

-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1) 현황 및 문제점

○ 스토킹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1999년 이후 8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매 회기마다 토론조차 하지 않고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 스토킹을 경험한 여성 중 피해 횟수 : 1회 33.5%, 2회 이상의 반복적 피해 경험 : 66.7%. 대부분 2회 이상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⁹⁾.
※ 스토킹 가해자 유형은 평소에 알던 사람이 60%에 해당. 특히 학교 선후배, 헤어진 애인이 대부분²⁰⁾.

○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2013년 4월부터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미약하다.
- 스토킹 피해자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에 비해 처벌수위가 너무 미약하여 다른 경범죄와 비슷하게 가법 계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큼.

2) 정책과제

○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스토킹 행위자 처벌, 피해자 보호 측면 규정할 수 있도록 제정

18) 39)와 동일
19) 여성가족부, 2013 전국성폭력실태조사
20) 44)와 동일

젠더 과제 10

가정폭력 목적조항 개정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처벌법)’은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 2014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의해 살해당한 여성 : 최소 114명,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 : 최소 95명. 최소 3일에 1명의 여성이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위험에 처해 있음²¹⁾.

○ 가정폭력범죄 사건처리하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형사처벌보다는 가정보호 측면에서의 보호처분으로 되고 있다.
- 처벌법의 목적조항이 ‘건전한 가정의 육성’ 및 ‘가정의 보호와 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과정에서 대다수가 상담조건부기소유예 등 불기소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있음.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가정폭력 사건의 가해자에게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여 면죄부를 주는 것임.

※ 검찰단계에서의 2013년 가정폭력사건 기소율 : 15.1%, 불기소율 : 60.4%, 가정보호송치율 : 24.1%(법무부 여성통계, 2013)

※ 법원단계에서 가정보호사건 전체 3636건 중 1206건(33.2%)이 불처분.

○ 가정폭력사건의 처벌 수위가 경미하기 때문에 가해자들에게 가정폭력이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느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 정책과제

○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 제1조 목적 조항을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
○ 검찰단계에서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폐지

젠더 과제 11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에 의거해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당국은 성매매피해자로 인정한 사례는 거의 없고 피해입증도 어려운 상황이다.

※ 단속된 피의자 중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 0건(2007~2009년)²²⁾.

- 성매매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못해서 성매매 행위자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되거나 벌금형 처벌을 받고 있음.

- 또한 성매매로 인한 피해나 알선범죄자를 신고 및 고소하는 여성들조차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

2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2014년 남편이나 애인 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들 분석 결과보고서’

22) 서울대여성연구소, 2010 성매매실태조사

해야 하는 상황.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성매매여성 비범죄화’가 시급.

- 성매매를 성착취범죄로 인식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하고 성산업 축소를 위해서 수요에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와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매매사건 전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범죄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범망을 빠져나가고 있지만, 법적 집행력은 이를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 성매매로 인한 수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실제업주와 건물주, 토지주 등에 대한 처벌과 불법수익 몰수추진을 강화하고 행정처분을 통해 업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정책과제

-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²³⁾
 -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의 ‘성매매행위자 처벌조항’을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하도록 개정 등
- 성매매 단속과 수사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 및 전문성 확보
 - 검찰과 경찰은 단속과 수사, 인권보호를 구분하지 말고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단속, 처벌해야 함.
 - 수사의 전문성 및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성매매수사 전담인력 필요

젠더 과제 12

미군 ‘위안부’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 「미군위안부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1)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정부는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유지를 위해 주한미군 주둔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하며 기지촌 성매매 집결지를 특수위안시설로 조성하여 주한미군들에게 제공하고, 위안부 제도를 운영하였다. 이는 국가의 범죄행위이다.
 - 정부는 미군 위안부들을 보건소에 등록시켜 정기적인 성병검진, 강제수용치료, 애국교육 등을 진행하였음²⁴⁾.
- 미군 위안부들은 기지촌에서 장기간에 걸친 피해 경험으로 인해 정신적 손상이 심각하며, 사회적 낙인과 빈곤, 질병 등으로 매우 열악한 삶을 살고 있다.
 - ※ 미군 위안부의 피해경험 : 성매매강요(84.3%), 화대착취(82.4%), 인신매매(56.9%), 그 외 강제낙태, 구타, 강간, 성폭력, 마약투여 등²⁵⁾.
 - ※ 미군 위안부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은 평균 질병기간은 19년 11개월²⁶⁾.
 - 미군 위안부의 현재 월 평균 소득은 50만원 미만으로, 질병이 있더라도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에서 자의적, 타의적으로 배제되어 건강과 의료의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음. 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편견, 환경적 고립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장애가 심각한 수준임²⁷⁾.

23) 2013년 9월 남인순 의원 발의

24) 신영숙, 미군 위안부의 현실과 과제, 『토론회: 미군 위안부의 숨겨진 진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새움터(2015. 10. 15)

25) 김현선 · 고미라, 2014, 기지촌여성 실태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조사, 새움터

26) 위와 동일.

27) 배수명, 기지촌 여성의 국가건강검진 기초분석 결과, 『토론회: 미군 위안부의 숨겨진 진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새움터

- 여성들이 더 이상 국가 폭력으로 희생되지 않도록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정부의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 또한 미군 위안부뿐만 아니라 일본군, 한국군 위안부 등 한국 내 군 위안부에 대한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정책과제

- ‘미군위안부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정부의 사과와 배상

젠더 과제 13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 전체 의석의 1/3로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의 젠더 불평등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여성 국회의원 비율 역시 16.3%에 불과하다.
 - ※ 한국의 성역차지수 : 142개국 중 117위(세계경제포럼, 2014)
여성 국회의원 비율 : 16.3%, 190개국 중 112위(국제의원연맹, 2015.9)
-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한 비례대표의 의석수(300석 중 54석)가 매우 적어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례대표 의석은 장기적으로 전체 국회의원 의석의 50%까지 확대해야 하고, 제20대 총선에는 1/3(국회의원 선출직과 비례대표 비율 2:1)로 확대해 정치개혁은 물론 사회세력 간 대표성을 제고해야 한다.
- 현재 지방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2조는 비례대표 50% 여성할당과 순번 위반 시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무효화하는 강제이행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③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후보자 50% 할당과 홀수번호 부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강제이행조치가 없기에 위반 시 제재가 불가능하다. 이에 법 규정의 형평성을 담보하고 여성 국회의원 확대를 위해 50% 여성할당과 남녀교호순번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등록을 무효화하거나 선거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 정책과제

- 비례대표 의석 전체 국회의원 의석의 1/3(국회의원 선출직과 비례대표 비율 2:1)로 확대
- 비례대표 후보자 50% 여성할당과 남녀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젠더 과제 14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마련

- 「공직선거법」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 지역구 여성당선자는 2012년 제19대 총선 결과 7.7%에 불과하고, 공직선거법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시 30%를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하는 ‘공천 할당’ 규정이 있지만

(2015. 10. 15)

위반 시 제재가 불가능하다.

-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④항의 “정당이 임기만으로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개정, “추천하여야 한다.”로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2조에 여성할당제 위반 시 강제이행조치로서 ‘등록무효’ 규정을 신설하거나 ‘선거보조금 삭감’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2) 정책과제

-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마련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

젠더 과제 15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이사에 여성 30% 할당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 20년 전 북경여성대회에서 미디어 분야의 행동강령으로 ‘미디어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표현과 결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와 접근을 증진시킨다’는 전략적 목표를 세운 바 있다.
- 그러나 현재 미디어 분야에서 표현과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성이다. 특히 미디어 정책을 결정하고 표현을 관리·감독하는 규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여성위원은 전무하다.
 - 미디어 내에서 여성과 관련된 의제가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으며 여성 관련 내용에 대한 심의 이후 처벌은 경미함.

미디어 규제 기구 여성위원 현황²⁸⁾

미디어 규제 기구	계	남성	여성	여성비율(%)
방송통신위원회	5명	5명	0명	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9명	9명	0명	0%

- 또한 공영방송의 사장을 선임하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이사진 비율 또한 여성이 현저하게 낮아 성인지적 관점의 프로그램이 거의 제작되지 않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 현황²⁹⁾

공영방송	계	남성	여성	여성비율(%)
KBS	11명	9명	2명	18%
MBC	9명	9명	0명	0%
EBS	9명	9명	0명	0%

2) 정책과제

-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여성 위원 30% 이상 할당
- 공영방송 이사에 여성 30% 이상 선임

28) 한국여성단체연합. 2014, ‘베이징+20과 post 2015,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변화’ 인용

29) 2015년 12월 현재

젠더 과제 16

남북여성교류를 저해하는 5.24조치 해제

- 관련 법 없음

1) 현황 및 문제점

- 1992년 남측 여성들이 휴전선을 넘어 북측 여성들과 만났던 남북 여성 만남은 한반도에서 열린 첫 번째 사회문화 교류였으며, 이후 남과 북의 여성들은 다양한 방식과 내용의 상호교류를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해 왔다.
- 그러나 남북 여성들의 소통이 단절되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상호신뢰 구축과정이 전무해졌다. 실무회담도 허용하지 않는 등 정부의 무조건적인 북한 여성 접촉 불허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여성의 공통 관심사와 문제 해결을 위한 통로가 막힘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여성의 의견교환과 의제설정이 불가능한 상태다.
-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5·24조치가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남북 여성 교류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는 그동안 남북이 합의했던 7·4남북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 그리고 10·4선언 등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동안 합의를 폐기하는 것이다.
- 또한 7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분단체제는 한반도에 거주하는 모든 이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며, 정전협정으로 인한 남북 군사 갈등의 첨예화는 긴장고조, 군사비 지출 증가, 군사주의 팽배 등을 낳고 이로 인해 남북 여성의 인권과 복지, 생존은 등한시되고 있다.

2) 정책과제

- 5·24조치의 조속한 해제와 민간 사회문화 교류 허용 및 여성교류 지원
- 남북당국자 회담,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한 평화협정 논의, 국회차원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개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 추진
- DMZ 개방 및 지속적인 남북여성교류를 위한 DMZ 내 남북여성평화센터 건립 : 직능별 교류 등 다양한 남북여성교류의 장으로 활용

젠더 과제 17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구조에 여성 40% 참여 보장

-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원전확대와 4대강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등 ‘지속가능발전’에 위배되는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에너지 수요관리 실패 등 과거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양적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특히 4대강 사업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막대한 사업예산 조달 방식과 과다한 유지관리 비용 등의 문제와 부실공사 논란 등이 얹힌 매우 복잡한 사안이다. 근래에는 광범위한 녹조가 나타나는 등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있다.

- 에너지 문제는 높은 소비 증가율과 높은 원전 밀집도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노후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고 송전탑 건설 등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시민사회의 갈등 또한 높다.

※ 한국은 OECD 국가 중 1990년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세계 1위.

○ 성평등은 지속가능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결정 과정의 여성참여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 정부 녹색성장위원회 38명 중 여성 5명(13%), 2017년까지 정부부처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 15% 확대 방안 추진중이나 환경부는 9.4%에 불과(2014 10월 현재).

2) 정책과제

-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구조에 여성 40% 참여보장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의 기여도를 높이고,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
- 4대강에 설치된 보를 개방하고, 4대강 재자연화 실시
- 원전 중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정책에서 분산형 지역 대안에너지 체계로 전환

젠더 과제 18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체류관리법」, 「관광진흥법」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 2015년도 상반기 외국인 주민은 총 174만1919명(안전행정부)이며, 이들 중 3분의 1에 달하는 이주여성들의 체류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
- ※ 외국인여성 이주유형별 미등록상대: 결혼이민 12만8193명 중 3132명(3%), 예술홍행비자 4024명 중 1514명(37.6%), E-9비자(비전문인력) 2만4748명 중 7389명(30%), 방문취업 12만3489명 중 2161명(1.8%)(법무부, 통계현황, 2014.12.31).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 영주권, 국적 취득 등의 권리가 한국인 가족에게 종속되지 않고 법적인 거주 자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주여성의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인신매매 및 성매매 피해를 방지하고 보호하도록 한국정부에 지속적인 권고를 하고 있다³⁰⁾³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의 구직기간 제한(25조 3항), 사업장 이동의 자유제한(25조)은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작업장을 이동하거나 작업장을 이탈할 경우 일자리 찾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구직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3개월 이내에 구직하지 못하면 출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이동 횟수도 3번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 사유도 고용주 중심이며, 사업장 이동 업종 제한이 있어 이주여성노동자의 취업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30) “위원회는 한국이 국제결혼 여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특히 한국인 남편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제결혼 여성이 이혼 혹은 별거하게 된 경우에 법적인 거주 자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사항, 2010)

31) a) 포괄적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하고, 관련 형법 조항을 개정할 것 b)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는 연례회사에 대한 현재의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E-6 비자 여성노동자들이 성매매 착취에 종속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설립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g) 인신매매방지지의정서 및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비준할 것.(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 2007, 2011)

2) 정책과제

- 이주여성노동자의 취업 이동의 자유와 성폭력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 이주여성노동자의 취업변경과 이동이 가능하도록 사업장 제한규정 개선
 - － 사용자와 이주여성노동자 모두 계약만료 후 갱신을 거절할 권리 보장
 - － 이주여성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성범죄 예방교육 및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성폭력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작업장과 숙소 마련
 - － 이주여성의 입장을 고려한 조사와 재판, 미등록상행일 경우 폭력피해자 입증 시 출국조치 대신 충분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 마련
-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종속 체류권 제도 개선과 폭력피해예방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체류관리법’ 개정
 - － 가정폭력에 의한 귀책사유를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정신적·언어적 학대와 협박 등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유호입 종사자 이주여성(E6-2)의 성매매·인신매매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 － 외국인연예인의 유호 시설 파견을 보장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근거 조항을 검토하여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고, 성매매 및 인신매매 피해로 인한 사업장 이탈의 경우에 벌금 면제

젠더 과제 19

여성장애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본법 제정

－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1) 현황 및 문제점

○ 여성장애인은 비장애 여성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하여 교육수준과 취업률, 소득수준이 현저히 낮다.

※ 2014년 여성장애인 중 무학이 21.0%, 남성장애인 4.7%(여성이 5배 높음), 1주일간 취업활동 한 여성장애인 22.8%, 남성장애인 46.3% 여성장애인 가구의 소득수준 : 전체 여성장애인의 1/3이 100만원 미만³²⁾

○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의 법률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전담하는 별도 추진체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³³⁾³⁴⁾.

○ 여성장애인이 전 생애에 걸쳐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여성장애인 정책 전담추진체계 및 부처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2) 정책과제

- 성인직적·장애인직적 관점이 반영된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 여성장애인 고용제도 및 교육 기회 확대 마련
 - － 장애인 의무 고용률 내 여성장애인 고용할당 50% 준수
 - － 취업과 진로에 필요한 전문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 장애여아, 장애청소년을 포함한 여성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32) 보건복지부,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33) 2006년 12월 통과된 UN의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는 여성장애인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34)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인식함과 동시에 기존의 장애인 정책 및 장애인 관련 법령 등을 성인지적으로 평가하고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여성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다.

- 여성장애인 성적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당사자 대상 교육
-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엄중처벌
- 전문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젠더 과제 20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및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 범위와 금액 확대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자신의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고 있다(제27조).
- 한부모 가족의 자녀가 안정된 여건에서 양육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은 비양육자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양육의 어려움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 미성년 자녀 양육 한부모 가족 중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83%,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에 있다' 4.6%, 양육비 지급판결을 받은 후에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비율이 30% 넘지 못한다³⁵⁾.
-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상담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상대방의 재산이나 소득을 조사하거나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낼 권한이 없고, 미 이행시 강제조항이 미비하여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서울지역에 한해서만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긴급양육비 지원 예산도 2억여 원에 불과하다. 또한 상담, 지원 인력의 부족해 충분한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예산확충이 절실하다.

2) 정책과제

-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 미 이행 시 여권발급 거부, 운전면허 금지, 신용등급 하향조정제도 등
-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 범위와 금액 확대
- 양육비 채권의 특수성 및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둔 법률지원 대책 마련

젠더 과제 21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체계 마련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차원에서 200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제정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가 마련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부서와 인력이 제대로 없다.³⁶⁾

35) 여성가족부, 2012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36) 여성농민 정책에 대한 업무를 맡아오던 부서는 1998년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농촌사회여성팀으로 축소되었다가 2013년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을 통해 추진 체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 실질적으로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시행해야 함.

2) 정책과제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전담부서와 인력 배치, 정책 심의 및 자문위원회 설치 등 추진 체계에 대한 내용 명시

젠더 과제 22 북한이탈여성의 제3국 출생자녀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 남한에 입국한 20~49세의 북한이탈여성들은 여성의 생애 주기를 고려할 때 임신, 출산, 육아를 하는 연령대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큰 연령대다.
- ※ 북한이탈여성 : 1만9267명 중 20~29세는 5,460명(28%), 30~39세는 6,203명(32%), 40~49세는 3,314명(17%), 전체의 77% 차지³⁷⁾.
- 북한이탈여성의 제3국 체류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국제결혼의 성격을 갖는 북한이탈여성의 입국이 늘고 있다.³⁸⁾ 이들은 입국한 이후에도 제3국에 남아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입국시키는 문제, 자녀양육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 제3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북한이탈여성은 남한에 입국한 후에도 제3국에 두고 온 자녀 양육비를 조달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는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대상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분류되는 자이기 때문에 남한에 입국해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현행법상 지원대상이 아님.
- 20대 전후 연령대의 돌봐야 할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여성의 경우에는 교육 기회의 상실로 저임금 구조에 놓일 가능성이 있어 부모 세대는 물론 자녀 세대에도 빈곤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2) 정책과제

- 북한이탈여성의 제3국 출생 자녀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북한이탈여성의 제3국 출생 자녀 정착 지원
- 제3국을 통해 입국한 자녀나 초청 입국된 자녀에 대한 정착교육 지원

젠더 과제 23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차별금지법」 제정

농촌복지여성과로 개편. 인력 변화없이 명칭만 지속적으로 변경하고 있음.

37) 통일부, 2014년 12월 현재.

38) 박정란, 2010, '탈북자 지원체계의 쟁점과 발전 방향', 『KDI 북한경제리뷰』Vol.12 No.9, p.66.

1) 현황 및 문제점

-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규제·개선할 수 있도록 포괄적(inclusive)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등 자치규범만으로는 차별로부터의 실질적 구제에 한계가 있음.
-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정부는 2007년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종교계와 재계의 거센 반발로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을 비롯한 7개 사유(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경력, 성적지향, 학력, 병력)를 삭제하여 17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논의되지 못한 채 회기만으로 폐기되었다.
 - 이후에도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특정종교계의 강한 반발로 입법 시도조차 차단되어 있는 상황.
- 2007년 이후 한국정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명시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받았다.

<한국 정부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 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보고서 (A/HRC/22/10)
-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7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
(CEDAW/C/KOR/CO/7), 2011. 7. 29.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3차, 제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
(CRC/C/KOR/CO/3-4), 2011. 10. 6.
-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의 15차, 16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
(CERD/C/KOR/15-16), 2012. 9. 5.
- 유엔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3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
2013.4.22.

2) 정책과제

-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차별금지법에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 선동 규제 조항 포함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선결과제 세부 내용>

선결 과제 1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현 정부는 2015년 10월 12일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전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다양성을 말살하고 특정 역사 인식만을 강요하는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1992년 헌법재판소도 역사교과서에 대한 국정보다는 검·인정을 통해 다양한 역사인식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유엔 또한 다양한 역사 교과서 발행을 각국에 권장하고 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역사인식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인정을 넘어 자유발행제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반민주적 행태로 하루속히 철회되어야 한다.

선결 과제 2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철회

2015년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노동자들과 비정규직들을 더욱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개약’이다. 여성노동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할 이번 개약의 핵심은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 해고를 가능하게 한 것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 문제를 제기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기간제노동자 정책은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50%, 여성비정규직 60%, 성별임금격차 OECD 1위라는 현실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할 정부가 이번 노동개약을 통해 오히려 노동시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즉시 ‘노동개혁안’을 폐기하고 노동관계법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

20대 국회에 바란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100가지 젠더정책 작성단체

분야	단체명
1. 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본법	한국여성단체연합
2. 여성노동	한국여성노동자회
3. 일 · 생활 균형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한부모연합
4. 젠더복지 / 돌봄	한국여성단체연합
5. 주거 / 교육	한국여성단체연합
6. 여성 건강	한국여성민우회
7. 여성 폭력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새움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8. 성주류화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9. 여성 대표성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10. 미디어	한국여성민우회
11. 통일 · 평화	평화를만드는여성회
12. 환경	여성환경연대
13. 이주여성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14. 여성장애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15. 한부모 여성	한국한부모연합
16. 여성농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17. 북한이탈여성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18. 성소수자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19. 아동 · 청소년	세이브더칠드런
20. 여성청년	한국여성단체연합